

##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

지원대상자	확인(제출)서류	발급기관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<b>수급자</b>	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주민센터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<b>차상위계층</b>	· 차상위계층 확인서	주민센터
③ <b>차차 상위계층</b> 가구구성원 *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*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부모, 배우자 및 기타 가족 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함께 기재 가능) ·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	주민센터
④ <b>국가 유공자</b> 가구구성원	·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	지방보훈청
⑤ 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<b>장애인</b>	· 장애인복지카드	주민센터
⑥ <b>여성가장</b> * 배우자가 없는(사별 또는 이혼)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*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	주민센터 해당기관
⑦ <b>다문화가족 자녀</b> *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· 기본증명서(국적취득사실 기재)	주민센터

<참고> 차차 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인정액(기준 중위소득 60%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2019년 기준 중위소득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	5,467,040	6,320,544	7,174,048
기준 중위소득 60%	1,204,205	1,743,917	2,256,020	2,768,121	3,280,224	3,792,327	4,304,428

\*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53,504원씩 증가(8인가구: 8,027,552원)

\* 관련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4호 “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”